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

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

항 목	현 행	개정건의(안)	개정건의사유
3.1.1(1)④	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권동식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권동측의 끝부분을 1가닥마다 클램프고정으로 할 수 있다.	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 또는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**고정하거나 기타의 장치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는 주로프의 파단 하중이상의 강도를 갖추고 연결은 로프의 파단 하중의 80%이상이어야 한다.** 또한, 권동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권동측의 끝부분을 1가닥마다 클램프고정으로 할 수 있다.	ㅇ기술개발에 따른 기준합리화 개선 ㅇ로프소켓의 형태 또는 방식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한 고정방식 허용
3.1.2(2)	구조상 경미한 부분(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)을 제외하고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. 다만, 유리를 사용할 경우**(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제외)**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·강화유리·접합유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	구조상 경미한 부분(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)을 제외하고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. 다만, 유리를 사용할 경우**(삭제)**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·강화유리·접합유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**하여야 하며,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유리 등 특수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의 내화성능이 인정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**	ㅇ기술개발에 따른 기준합리화 개선 ㅇ비상용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특수재료 사용에 대하여 소재의 제한이 아닌 내화성능 등으로 규정함

항 목	현 행	개정건의(안)	개정건의사유
3.1.3(2)	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. 다만 승강로의 벽(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한정)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**(비상용 제외)**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·강화유리·접합유리 및 복층유리(16mm 이상)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	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. 다만 승강로의 벽(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한정)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**(삭제)**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·강화유리·접합유리 및 복층유리(16mm이상)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	ㅇ기술개발에 따른 기준합리화 개선 ㅇ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유리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구분 개정
3.1.3(6)②	수평거리가 125㎜를 초과할 경우에는 **금속제판 등**으로 최상정지층의 바닥아래에서 최하정지층의 출입구상부까지 출입문을 제외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부분에 대하여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헤더케이스상부와 보호면하단까지의 틈새는 38㎜ 이하이어야 하나, 보수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㎜ 이하로 할 수 있으며,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출입문이 상승개폐문 또는 상하개폐문일 때에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수평거리가 125㎜를 초과할 경우에는 **승강로 벽의 재질과 동등이상의 재료로** 최상정지층의 바닥아래에서 최하정지층의 출입구상부까지 출입문을 제외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부분에 대하여 보호면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헤더케이스상부와 보호면하단까지의 틈새는 38㎜ 이하이어야 하나, 보수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㎜ 이하로 할 수 있으며,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출입문이 상승개폐문 또는 상하개폐문일 때에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	ㅇ기술개발에 따른 기준합리화 개선 ㅇ강도 및 내화성능 등을 만족할 경우 유리 및 기타 신소재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재의 제한이 아닌 성능으로 규정

항 목	현 행	개정건의(안)	개정건의사유
3.1.3(8)	승강로의 치수는 **KS B ISO 4190-1 부속서에서** 규정한 치수의 면적비율에 따른다.	삭제	ㅇ기술개발에 따른 기준 합리화 개선 ㅇ공간활용 극대화 및 업체 기술력 향상
3.1.11(8)	승강로는 승강장에 통하는 출입구 및 기계실에 통하는 와이어로프 전선 등의 주위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.	승강로는 승강장에 통하는 출입구 및 기계실에 통하는 와이어로프 전선 등의 주위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. **다만, 유리 등 특수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의 내화성능이 인정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**	ㅇ기술개발에 따른 기준 합리화 개선 ㅇ3.1.3(2)항 삭제 항목 보완 ㅇ비상용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특수재료 사용에 대하여 소재의 제한이 아닌 내화성능 등으로 규정함
3.1.3(1)	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(비상구출구를 포함)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옥내 전망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승강로 주벽이 일부 없는 **전망용** 엘리베이터 등 **특수구조의 것으로서 화재시 관제운전기능, 낙하물에 대한 보호벽, 보호벽으로부터 2m 이내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는 난간이나 화단 또는 연못**	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 및 출입문(비상구출구를 포함)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옥내 전망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승강로 주벽이 일부 없는 엘리베이터**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의 높이까지 둘러 쌓인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**	ㅇ기술개발에 따른 기준 합리화 개선 ㅇ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, 연못 등의 설치 규정 삭제 및 공간 제한과 독창적인 디자인 구현이 가능 토록 개선

항 목	현 행	개정건의(안)	개정건의사유
	등의 설치 및 화재에 대비한 보호기능 등을 구비하여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가. 승강장 문쪽에서 최소 3.50m 이상 나. 다른 쪽 및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분과의 최소 수평거리가 0.5m 인 곳에서 최소 2.50m, 만일 움직이는 부분까지 거리가 0.50m를 초과하면 2.50m의 값은 순차적으로 줄여 2.0m의 거리에서 최소 높이 1.10m까지 될 수 있다. <그림1, 그림2 참조> 다. 둘러 쌓인 부분은 복도, 계단 또는 플랫폼의 가장자리로부터 최대 0.15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. 라. 외기에 노출된 엘리베이터 즉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안전성평가를 통한 특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.	

항 목	현 행	개정건의(안)	개정건의사유
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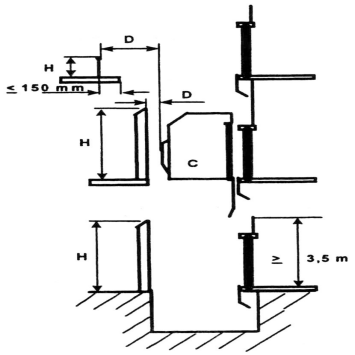 C 카 H 둘러 쌓인 높이 D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분까지의 거리(그림 2 참조) **<그림 1> 부분적으로 둘러 쌓인 승강로**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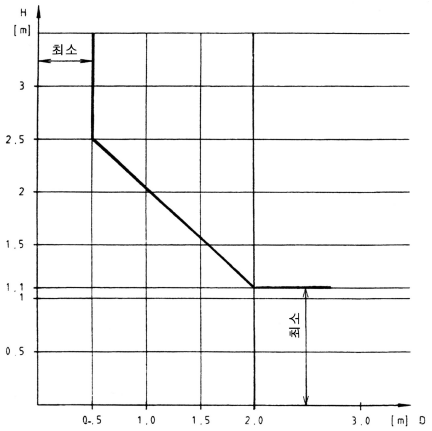 **<그림 2> 움직이는 부분과의 거리에 따른 높이**	

항 목	현 행	개정건의(안)	개정건의사유
4.3.2(14)	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의 사이에 생기는 3각부에 사람의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.	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의 사이에 **운행가능방향으로** 생기는 3각부에 사람의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.	ㅇ운행방향에 따른 3각부 보호 조치를 규정 ㅇ규정 적용 현실화 및 규제완화
4.3.2(14)①	**<그림 1>**과 같이 3각부가 형성되지 않도록 3각부 틈새의 수직거리가 30㎝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디딤판의 진행속도로 부딪쳤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(스폰지 등)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핸드레일외측 끝단에서 50㎝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교차각이 45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**<그림 3>**과 같이 3각부가 형성되지 않도록 3각부 틈새의 수직거리가 30㎝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디딤판의 진행속도로 부딪쳤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(스폰지 등)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핸드레일외측 끝단에서 50㎝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교차각이 45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ㅇ그림 번호 수정
4.3.2(21)②	주의표지판은 국문으로 읽기 쉽게 표기하거나 크기 80mm×80mm 이상의 그림으로 **그림 2**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	주의표지판은 국문으로 읽기 쉽게 표기하거나 크기 80mm×80mm 이상의 그림으로 **<그림 4>**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	ㅇ그림 번호 수정

항 목	현 행	개정건의(안)	개정건의사유
5.1	완성 및 수시검사에서는 3.의 전항목과 3.에서 정하지 않은 4.의 각 항목 및 **8항의 항목**에 대하여 검사한다. 다만, 휠체어리프트 검사항목 중 완성 및 수시검사시 현장확인이 불가한 부분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.	완성 및 수시검사에서는 3.의 전항목과 3.에서 정하지 않은 4.의 각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. 다만, 휠체어리프트 검사항목 중 완성 및 수시검사시 현장확인이 불가한 부분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.	ㅇ문구 수정
5.2	정기검사에서는 **하중시험을** 제외한 4.와 7.의 전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. 또한,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**자체검사**의 실시상태를 점검한다.	정기검사에서는 **하중(분동)을 사용하는 검사를** 제외한 4.와 7.의 전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. 또한,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**자체점검**의 실시상태를 점검한다.	ㅇ용어수정 및 문구 명확화

6.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고 사용중이거나 건축허가가 진행중인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